많은 분들이 굳이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두어 사용해야하나?? 라고 말이죠.



[ 보험료와 보험금 ]

보험료: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입니다.

※ 보험료 = 위험보험료(사고위험 보장) + 저축보험료(환급금의 재원)+부가보험료(신계약비, 유지비, 수금비)

보험금: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, 체결된 계약의 보장 범위(내용 및 금액) 내에서 지급합니다.

내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 보험료, 내가 보장 받는 돈이 보험금입니다.



보험사고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그런데 <u>보험사고에는</u>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, 질병 그리고 업무상으로 입은 상해 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보험가입자인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는 줄 알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, 막상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 보험사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 울까요.

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 부분을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## 나)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

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. (\* 보험계약자)

반면, 보험가액이라 함은 <mark>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</mark>을 말합니다. (\* 피보험자)

보험가입금액을 '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'이라고 하며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.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.

보험가액은 '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'이라고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<mark>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(=피보험이익)를 금전</mark> 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.

보험가액은 <mark>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</mark>으로서 **손해액 산정의 기초**가 되며, 일부보험 · 전부보험 · 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.

따라서,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.. 일반적으론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나 예외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
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차이(불일치)가 나는 경우 - 초과보험, 중복보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아래 내용은 참고로 알아두세요.

이것은 '이득금지의 원칙'에 따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된 금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손해보험 특성에 있습니다.

## 이득금지의 원칙

'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을 말한다.

손해보험은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손해액 이상 을 보상받아서는 안된다.

만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으로 인한 이득을 위하여 고의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 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다.

에를 들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에 대한 보험가액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2억 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가입하거 나, 두 곳의 보험사에 각각 1억 원으로 가입했을 때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면 총가입금액이 2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보상되는 금액은 두 가지 경우 모두 1억 원뿐이다.

(만일 2억 원을 모두 지급한다면 화재사고로 1억 원을 벌게 되므로 보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)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손해보험을 가입 하면 보험료만 손해 보게 된다.'